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8 발의연월일: 2020. 10. 20.

발 의 자:유상범·박형수·전주혜

김 웅ㆍ권영세ㆍ김기현

최형두 · 이 용 · 김승수

이주환 · 임이자 · 정점식

이종배 • 권명호 • 김성원

곽상도 의원(16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인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라 한다) 이 제정되어 2020. 7. 15.부터 시행 중임.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충분한 논의없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개선하여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제정된 결과,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

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선,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도 포함됨으로써 애초 부패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몰각하여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자의적 법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

또한, 헌법 제12조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공수처법은 판사와 검사와 달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처검사라는 개념을 창설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헌법기관인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 원리에도 반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과도 모순적임.

게다가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수처에 이른바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부실수사와 사건암장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수처 설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한편 공수처법은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데,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고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로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함.

이에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충실히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위헌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수사권 분점을 도모하고, 형사사법에 있어 제도적 정합성이 빈틈없이 유지되는 공수처가 설치, 운영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사범위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현행 제2조제3호가목·나목·바목·사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삭제).
- 나.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현행 제3조제1 항제2호,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 삭제).
- 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 및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안 제24조제1항, 현행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
- 라. 공수처 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현행 제30조 삭제).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나목·바목·사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판단되는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	3
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	
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	
다.	
<u>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u>	<u><삭 제></u>
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	<u><삭 제></u>
법」 제141조, 제225조, 제	
227조, 제227조의2, 제229	
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	
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	

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 마. (생 략) 바. 「국가정보원법」 제18 | <삭 제> 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 <삭 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아. (생략)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 56조까지의 죄 및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 제14조제1항의 죄

라. (생 략)

5. (생략)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4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설치와 독립성) ① -----

- 1. (생략)
-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 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②·③ (생 략)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 | ① ------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 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 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 | <삭 제> 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 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생략)
-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 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 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판단되는 경우 이 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 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 | <삭 제> 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 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 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 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 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 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 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 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삭 제>

<u>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u> <u>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u> <u>한다.</u>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처장은 제26조제2항

 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

<삭 제>

- 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 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 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 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

<u>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u> 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 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u><삭</u> 제>